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실태 및 외국의 구속제도

〈치안연구소 연구관 경감〉 정 초 영

I. 머리말

최근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체 구속 기간중 경찰의 구속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구속기간 운영실태 및 외국의 구속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구속실태

1. 현 구속제도 개관

(1) 피의자 구속의 의의

피의자 구속이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

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후 영장청구 기간은 2일(48시간) 이내이며,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체포는 구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피의자 구속의 요건 및 절차

가. 구속의 요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서 피의자에게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속한 후에는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나.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기간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집행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긴급한 경우 공소사실요지 및 영장 발부사실 고지 후 집행한 뒤 구속영장제시 가능)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다만 판사는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간에 산입한다.

2. 구속의 실태

(1) 구속의 현실적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 이외에 현실적으로 범죄형량의 경중에 의한 영장발부, 구속으로 인한 징역·금고 등 형벌효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보상을 위한 압력수단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아 피의자의 구속비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1993년도 인구10만명당 구속자수는 한국이 330명, 일본이 69명, 독일이 60.7명이며 90년대의 총 피의자 중 구속피의자 비율은 한국 7.7%, 독일 3.92%, 일본은 영장청구율 3.4% 임 - 이주홍, “헌법과 형사재판”,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Ⅱ, 1997, 40~41면)

(2) 구속장소

사법경찰관이 구속시킨 경우 구속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며 검사가 구속시킨 경우 구

치소, 교도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구속기간

가. 사법경찰관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경우 피의자 구속기간을 아래와 같이 활용한다.

- 1~3일 : 피의자 체포, 체포통지, 피의자 신문조서작성, 피해자 등 관계자 조사 및 조서작성, 검찰에의 긴급체포 승인건의, 영장신청, 구속통지 등

- 4~6일 : 여죄수사, 장물수사, 공범수사, 현장검증, 관계자 대질조사, 각종 통계원표(발생·검거원표, 피의자 환경조사표) 작성 등

- 7일 : 수사자료표 작성, 압수물목록·기록목록 작성, 송치의견서 작성 등 송치준비

- 8일 : 송치

위의 구속기간활용은 간단한 사건일 경우 단축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 공휴일·일요일·토요일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자 송치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나.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인지하여 수사한 경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활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작성 수사서류

의 검토 및 일부 보강조사를 거쳐 기초준비하는데 구속기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외국의 구속제도

1. 미 국

경찰에서 피의자 체포시는 체포된 경찰구역의 관할유치시설 또는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는 지체없이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에게 인도하여 심문을 실시하며, 체포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는 경찰관은 치안판사에 구인과 동시 고발장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받으며 구인된 피의자는 치안판사의 심문을 받은 후 주로 카운티의 구치소에 구금된다.

경찰체포에서 치안판사심문 후 구치소 구금까지는 통상 3~4일이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서는 체포된 후 10일이상 경찰서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피의자 대부분은 소추전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특히 경죄인 경우는 체포된 후 24시간 이내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이 통례이다.

2. 영 국

경찰에서 체포시 24시간 이내(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시) 또는 신속히(영장에 의한 체

포시) 치안판사에 인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 유치시간은 24시간 이내이나 유치책임 경찰관(보통 경정급)이 2차에 걸쳐 각 36시간 연장 가능(최고 96시간)토록 하고 있다.

경찰 유치단계에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구속절차로 전환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고, 구속이 되면 최장 8일마다 치안판사가 구속기간 갱신하며 보통 구속기간이 3~6주 정도로서 이 기간에 경찰이 자유로이 방문수사할 수 있다.

3. 일본

경찰에서 피의자 체포하여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신병부 송치토록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송치받으면 구속 영장청구하여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10일간 구속기간 연장 청구 가능하며 중범죄는 5일간 재 연장청구가 가능함).

실제로는 경찰에서 48시간 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둔 상태에서 서류만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경우 구속 피의자를 대부분 대용감옥(경찰서유치장)에 수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의 구속기간인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의 보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독일

경찰에서 체포시 지체없이 판사에 인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일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심야체포, 공휴일 체포 등)는 익일 중으로 판사에 인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사의 구속명령에 의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며 구속 후 통상 6개월 이내 최고 1년까지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5. 프랑스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24시간 임시구금이 가능하며 검사의 연장허가에 의해 24시간 연장구금이 가능하다. 임시구금후 검사에 피의자 인도하여 검사가 구속청구하며 구속후에는 검사의 지휘하에 경죄의 경우 4개월(2개월 연장 가능) 중죄의 경우 1년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Ⅳ. 구속제도의 개선방향

1. 구속기간

구속은 범죄자 처벌,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의 정확한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곤란은 물론 피의자의 혐의사실 유무 등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수사기관 구속기간 30일(경찰 10일, 검찰 최대20일)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며, 사안이 단순한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짧은 구속기간내에 기소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장기구속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 곤란하다.

또한 수사기관간(경찰·검찰)의 구속기간 배분문제도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주된 수사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구분하여 주된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구속기간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경찰인지사건의 경우와 검사인지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인지사건의 경우는 현재 검사포함 최장 30일까지 구속가능하나 검사직접인 지사건은 최장 20일까지 구속가능함으로서 특정사건이 경찰인지시와 검사인지시 구속기간제한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인지사건의 경우 검사구속기간을 연장 없이 10일로 제한할 필요 있다.

2. 구속장소

독일-프랑스의 경우 기소전 장기간(6개월~12개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허용되는 바 이는 구속피의자의 구금장소를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구금장소인 구치소에 구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치소의 현저한 부족으로 당장 피의자의 구치소 구금은 불가능하지

만, 장기적으로 심리적 위협상태가 수사기관보다 훨씬 적은 제3의 객관적 구금장소에 구금하고 사법부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한다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단축에 대한 논란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3. 기타 관련문제

(1) 보석, 구속적부심제도, 변호인참여제도 확대

수사기관에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충분한 구속기간을 부여하면서, 부당한 장기 구속 등 인권침해 우려는 보석 및 구속적부심제도의 활용, 변호사참여제도 확대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재판 구속기간 문제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장 1개월에 불과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폐해보다는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한 기소 후 구속기간의 장기폐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 구속기간의 단축문제 검토가 시급하다.